

2026년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청양분소 제2차 직원채용 공고

2026년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청양분소 신규 운영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청양분소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보육전문요원	1명	육아지원사업 등 분소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필수사항]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우대사항] - 청양군 내 거주자 -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업무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

2. 전형방법 및 전형기간

구 분	일 정
서류접수	2026. 8. 6.(목) ~ 8. 20.(목)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 21.(금) 예정, 개별통보
면접심사	8. 25.(화) 예정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후 최종합격자 결정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 반드시 응시분야 표기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구비 제출바랍니다. (증명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가)

- ① 응시원서 (분소 지정서식) 1부
- ② 자기소개서 (분소 지정서식)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분소 지정서식) 1부
-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⑤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⑥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cyicare@daum.net) 및 우편, 방문 접수

주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50, 1층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청양분소 인사담당자 앞

※ 서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 ① 내부기준에 따름
- ②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나. 근로조건

- ① 근무일 및 근무시간
 - 근무일: 화요일~토요일
 - 근무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제외)
 - 휴무일: 법정 휴일, 주휴일은 일요일, 월요일
- ②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 ③ 근무개시: 2026년 9월 1일 예정

직 종	근무지	근무시간	근무기간
보육전문요원 (계약직)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청양분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150, 청양행복누리센터 1층)	화~토 9:00~18:00 ※ 초과, 탄력 근무 가능한 자	계약일 ~ 26년 12월 31일

※계약직의 경우 근무 평가 후 재계약 가능

5. 기타사항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5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 임용 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 : 041-942-3070 (내선1번)